■ 전파법 시행규칙 [별지 제43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(www.emsip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[]무선국 / []전파응용설비 []폐 지 / []운용휴지 / []재운용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법인명 (성명)	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 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	(-) 담당자: 전화: 팩스: 전자우편:		

허가(신고) 사항	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 종별		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(무선국만 해당합니다)	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
	폐지 또는 운용휴지	폐지 연월일 (휴지기간)		
		사유		
	재운용 개시일(재운용 신고 시에 작성합니다)			

「전파법」 제25조의2제1항 및 제58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([]무선국 []전파응용설비)의 ([]폐지 []운용휴지 []재운용)를(을)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○○전파관리소장 귀하

첨부서류	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심사	→	대장 정리	→	수리 통보

신고인 처리기관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전파정책국), 전파관리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